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안

의안 번호	310
----------	-----

발의 연월일 : 2008. 2. 21.

발 의 자 : 김재경의원 외 8인

1. 제안이유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나. 경관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다. 경관사업의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마. 경관협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내지 제19조).

바. 경관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내지 제2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필요 없음
- 라. 기타
 - 1) 찬성의원 서명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대전광역시의 지역 및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경관관리의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경관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영역과 내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순서로 위계를 갖는다.
 - 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가장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
 - 나.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
 - 다.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립되는 경관계획
 - 라.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
 - 마.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
 -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수립되는 분야별, 권역별 경관계획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인가를 얻어 체결되는 협정을 말한다.

제3조(시장·구청장·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민의 참여유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 · 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 · 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 ·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하 “도시계획등”이라 한다)과 연계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경관계획 중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 · 정비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경관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5,000)
7. 경관계획도(1/5,000)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② 시장은 관련기관 및 관련 구청장에게 제안된 경관계획에 관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①영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의 보전 · 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분야별, 권역별 경관계획
 2. 경관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경관계획
 3. 지역경관 특성의 관리 및 형성을 위한 경관계획
 4.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내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대한 지원계획
 5. 그 밖에 시민의 요구와 시장이 경관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구역 내의 경관계획
- ②시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경관관리지침을 작성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 개최 전까지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공청회의 주재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 중에서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발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3. 시민은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②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 ③공청회의 발표자 및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경관사업
2. 도시시설물 설치 · 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제11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방안
5. 유지관리비 조달방안
6.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가.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 나. 경관사업 관련 전문가
 - 다. 경관사업 시행자
 - 라.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2.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며 서기는 도시디자인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 ②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감독)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는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15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등의 부지내의 위치, 규모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타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제16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6조제5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제1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
2. 협정체결자의 동의서
3.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4.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19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 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공공부문에 대한 경관계획수립·시행 포함)
2. 경관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
3. 단계별, 연차별 사업계획 관련 도서
4. 사업비 산출근거
5. 사업비 조달계획
6. 유지관리계획

제20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영 제1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서 정한 도시 재정비위원회
2.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8조의 규정에서 정한 도 시균형발전위원회

제21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으로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된다.
-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①영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상세계획
2.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m² 이상 건축물
3. 별표 1의 공공발주 공사

②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 단체의 장은 심의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전 및 실시계획 승인 전
2. 용역사업은 실시설계 이전
3. 그 밖의 사업은 기본 계획 및 디자인 확정 이전 또는 사업발주 이전

제23조(경관위원회의 자문 대상) 법 제2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안한 경관계획
2.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제24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디자인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디자인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미비 등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2호에 의거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4. 각 위원은 특정분야에 대하여 위원장의 연구 분석 및 자문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중이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 제21조에 의한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건축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별표】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공공발주 공사(제22조제1항제3호 관련)

1. 심의대상(단,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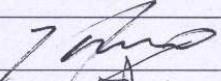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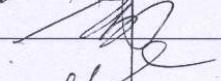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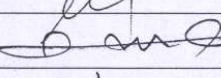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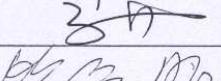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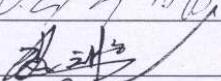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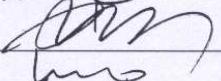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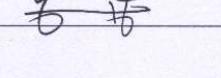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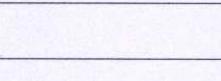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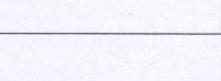
분 류	대상범위
공공발주 ¹⁾ 공사	1. 건당 3억 이상의 도시시설물 공사 2. 건당 5억 이상의 조명공사 3. 건당 30억 이상의 건축공사 4. 건당 50억 이상의 교량, 고가도로, 육교 등 토목공사 5. 건당 50억 이상의 도로 등 토목공사 6. 건당 10억 이상의 공원, 조경공사

1) 시, 자치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 설치된 공사·공단, 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에 한함.

2. 도시시설물 종류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도시구조물	입체교차, 석축 및 용벽, 방음벽, 블라드,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낙석방지망, 가로등, 도로명판
가로 시설물	가로수 보호덮개, 가로 녹지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벤치
	보행자안내표지, 택시·버스 승차대, 정류소 표지판, 택시 표지판, 주차장 안내표지판, 주차요금 표지판,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자전거보관대,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교통감시시설
	지하철출입구(캐노피 포함), 지하철 안내표지판, 환기구 (흡·배기구), 승강기(지상노출)
	관광안내소, 관광안내도, 관광안내 표지판, 동상·기념비
	휴지통, 공중화장실, 대기오염 전광판
보도상 영업시설 및 기타 점용시설	가. 분전함·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가로등, 변압탑, 우체통, 소화전, 공중전화,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무선 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사설안내표지·아치,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자동판매기 버스카드판매대, 노점 나.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안 찬성의원서명

의원명	서명	비고
김재경		
김숙자		
이승진		
이준홍		
김영미		
임수민		
김희경		
김인식		
김재용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안

심사 보고서

2008년 2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

I. 심사 결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8년 2월 21일 김재경의원외 8인
2. 회부일자 : 2008년 2월 21일
3. 상정일자 : 제17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8. 2. 28)상정, 심사,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김재경 의원)

1. 제안이유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나. 경관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다. 경관사업의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마. 경관협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내지 제19조).
- 바. 경관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내지 제24조).

III.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이환구)

- 본 조례안은 지난 2007. 11. 18부터 「경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조례안 세부내용을 보면,

- 조례제명을 「대전광역시 경관조례」로 정하고, 안 제6조 내지 안 제10조에서는 경관계획의 수립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 안 제11조 내지 안 제13조에서는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 안 제14조 내지 안 제19에서는 경관협정에 관한 내용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 안 제20조 내지 안 제24에서는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

이상과 같이 조례안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경관법」 시행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 조속한 경관계획 수립과 국비를 포함한 예산확보 대책 마련 등
도시경관을 단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
하고, 내실 있는 시행으로 도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 답변요지 : 생 략

V. 토 론 요 지 : 생 략

VI.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